

제166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례안상정

(조례 9건)

거창군

--- 목 차 ---

| 의 안 번 호 | 건 명 | 페이지 |
|------------|----------------------------------|-----|
| 2010 ~ 13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 2010 ~ 14 | 거창군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 2010 ~ 15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 2010 ~ 16 |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7 |
| 2010 ~ 17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
| 2010 ~ 18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
| 2010 ~ 19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
| 2010 ~ 20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
| 2010 ~ 21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3 |
|----------|-----------|

| | |
|-------|-------------|
| 제출일자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422호, 20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상향 결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함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2009년의 경우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를 개정(2009.5.29, 조례 제1926호)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국회일정상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도까지 연장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례 제1926호(2009.5.29)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입법보완 시까지 세부담을 완화함(안 조례 제1926호 부칙 제2조).
 -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 :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90조, 제237조, 제238조의2
- 2010년도 행정안전부 세율인하 권고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2. 19. ~ 2009. 3.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26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적용기한) ----- 2009년도 및 2010년도 ----- -----.</p>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4 |
|----------|-----------|

| | |
|-------|-------------|
| 제출연월일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이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 및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의 종류와 기준 및 금액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조, 안 별표 1의2 신설).

○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조).

○ 일반 수수료의 경우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

○ 수입증지 요금제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

다.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규정 미비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수수료의 환불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단서 신설).

○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반환함

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 행정안전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 및 관계부처로의 사무 이관에 따른 신상에 관한 항목 정비
 - 부양가족사실확인 : 외교통상부 이관 ⇒ 존치
 - 독자사실확인 : 병무청 이관 ⇒ 존치
 - 호(제)적부 멸실확인(무적자사실확인) : 법원행정처 이관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사실확인으로 명칭변경 존치
-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철거사실 증명 ⇒ 건축물말소대장 사본교부
- 개별 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 삭제
 - 지방세납세증명 ⇒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료 발급
 - 건설기계 저당(말소)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수수료 명시(대당 1천원)
 -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
 - 조립실적확인
 -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원천징수 공제증명
 - 보상금 지불증명 ⇒ 토지수용확인서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전자정부법」 제33조, 제3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28. ~ 2010. 2.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등록규제 완화 1건(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p> | <p>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p> |
|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p> | <p>제5조(징수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
|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p> |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 ----- ----- .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1. 신상에 관한 사항 | | | |
| (1) <u>이장재직사실확인</u> | 1통 | 800 | |
| (2) 재직(퇴직,경력)증명 | 1통 | 1,000 | |
| (3) <u>부양가족사실확인</u> | <u>1통</u> | <u>1,000</u> | |
| (4) <u>독자사실확인</u> | <u>1통</u> | <u>1,000</u> | |
| (5) <u>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u> | 1통 | 1,000 | |
|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 | |
| (1) <u>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u> | 1통 | 1,000 | |
|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 | | |
|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 1필지 | 800 200 | |
| (2) 개별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 1주택 | 800 200 | |
| (3) 공동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 1주택 | 800 200 | |
|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 (나) 개 인 | 1건 1건 | 30,000 20,000 | |
|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가) 법 인 (나) 개 인 | 1건 1건 | 5,000 3,000 | |
| (6) 분사무소 설치신고 | 1건 | 20,000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 | | |
| (1) 지방세 세목별 <u>과세증명</u> | 1통 | 800 | |
| 5.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 | |
|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 1건 | 5,000 | |
|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 1건 | 3,000 | |
| 6.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 | |
| (1) 공장등록 증명 | 1건 | 1,000 | |
| (2) 입지기준 확인신청 | 1건 | 31,000 | |
|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1건 | 20,000 | |
| (4)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 1건 | 20,000 | |
|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 1건 | 20,000 | |
|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 1건 | 20,000 | |
|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 | 1건 | 20,000 | |
|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신청 | 1건 | 100,000 | |
| (9)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 1건 | 51,000 | |
| (10)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 1건 | 24,000 | |
| (1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1건 | 24,000 | |
| (1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 1건 | 5,000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7.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 | | | |
| (1)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 | | |
| (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 1건 | 40,000 | |
| (나)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1건 | 20,000 | |
| (다)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 1건 | 20,000 | |
| (라)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 1건 | 10,000 | |
| (2)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 1건 | 10,000 | |
|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 신고) | 1건 | 20,000 | |
|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등록, 신고) | 1건 | 10,000 | |
| (5)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 30,000 | |
| (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 10,000 | |
| (7)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 1건 | 31,000 | |
| 8. 환경 등에 관한 사항 | | | |
|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1건 | 10,000 | |
|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 1건 | 5,000 | |
| 9. 건설 등에 관한 사항 | | | |
|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 1건 | 5,000 | |
| (2)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 | 1건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 |
| (3) 소하천점 사용기간 연장신청 | 1건 | 1,300 | |
| (4)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 1건 | 5,000 | |
| (5)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 1건 | 5,000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10.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 | | |
| (1)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 1통 | 800 | |
| (2) 표준주택 설계도면 | 1호 | 1,500 | |
|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건 | 600 | |
| (4)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 1건 | 1,000 | |
|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필지 | 800 | |
| (6) 환지예정지 분할 | 1필지 | 1,000 | |
|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 1필지 | 1,000 | |
|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1,000 | |
| (9) 체비지 분할 신청 | 1건 | 1,000 | |
|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1,000 | |
| (11)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 1건 | 1,000 | |
|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1건 | 1,000 | |
| (13)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 1건 | 1,000 | |
|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1필지 | 1,000 | |
| ※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 “ | 1,500 | |
| 11.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 | | |
|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 1건 | 800 | |
| (2)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신청 | 1건 | 10,000 | |
| (3)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 1건 | 5,000 | |
| (4) 유해어업 사용허가 | 1건 | 5,000 | |
| (5)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 30,000 | |
| (6)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10,000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12.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 | |
| (1) 의료기관 관련 신고 | | | |
|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 1건 | 100,000 | |
|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 1건 | 40,000 | |
|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 1건 | 40,000 | |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 1건 | 20,000 | |
|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재교부 | 1건 | 5,000 | |
|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 | | |
| (가) 치과기공소 인정 | 1건 | 20,000 | |
|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1건 | 10,000 | |
|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 | | |
|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1건 | 8,000 | |
|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8,000 | |
| (4) 위생관련 영업신고 | | | |
| (가) 위생처리업 신고 | 1건 | 22,000 | |
|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1건 | 12,000 | |
| (다) 세척제제조업 신고 | 1건 | 29,000 | |
| (라)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 1건 | 17,000 | |
| (마)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고 | 1건 | 14,000 | |
| (바)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 1건 | 5,000 | |
| 13.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 | | |
|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 1건 | 4,000 | |
|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 1건 | 2,000 | |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방서 교부 (가) 신 규 (나) 갱 신 | 1건 1건 | 4,000 2,000 | |
| (4) 급수공사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 |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 |
| (5) 시공자재 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2,000 4,000 | |
| (6) 준공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2,000 4,000 | |
| (7) 수도계량기 시험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1,000 2,000 | |
| (8) 정수처분 해제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2,000 4,000 | |
| 14.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건 | 500 | |

[별표 1의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
| 1) 주민등록등·초본 | 1통 | 200 | |
| 2)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500 | |
| 3) 제적등본 | 1통 | 500 | |
| 4) 제적초본 | 1통 | 300 | |
|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1통 | 500 | |
| | 연도 추가 | 100 | |
| 6) 토지(임야)대장 | 1통 | 300 | |
| | 추가 1장당 | 100 | |
| 7) 건축물대장 | 1통 | 300 | |
| 8) 자동차등록원부(관내) | 1통 | 200 | |
|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 1통 | 1,000 | |
| 10)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 1통 | 300 | |
| 11)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 1통 | 1,000 | |
| 12) 농지원부(관내) | 1통 | 500 | |
| 13) 지방세과세증명서 | 1통 | 500 |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5 |
|----------|-----------|

| | |
|-------|------------|
| 제출연월일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569호, '09.4.1 공포)으로 법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소관 위원회의 명칭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으로 이관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목적조항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함(안 조례 제명, 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명 변경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인용법령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법」

나.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관계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함

-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과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6조, 제7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절차와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와 영 제12조의2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기준과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대장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3조, 제14조)
-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와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9조, 제20조)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26조)
- 그 밖에 삭제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별지서식을 삭제함(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 포함) 시 제작 비용의 산정기준과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내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고시하고, 군 수입증지로 징수함

라.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의 관리·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함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함
-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음

바. 법령 개정으로 종전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9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그 밖에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변경함
(안 제12조, 제6장 제목,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본예산 1,680천원(운영수당)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2. 1. ~ 2010. 2.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으로 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로,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로,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 비용의 산정은 군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인자 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4장(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명사업”을 “법”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건축물 등”을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을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도로명 관련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도로명시설”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을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화 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을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로 한다.

제9장의 제목 “거창군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을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위촉위원이”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진행사항”을 “심의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개 |
|--|---|
| 행 | 정 |
| 안 | |
| <p><u>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u></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도로명의 변경</u></p> | <p><u>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도로명주소법」 -----</p> <p>-----</p> <p>-----</p> <p>-----</p> <p>-----</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p> <p>-----,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p> <p>-----</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p> | <p><삭 제></p> |
| <p>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p> <p>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p> <p>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p> <p>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p> <p>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p> <p>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p> <p>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군수의 의견</p> <p>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를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 |

| 현행 | 개정안 |
|--|-----|
| <p>⑤ 군수는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4항을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제4항을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⑦ 군수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 |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고지는 해당 마을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p> <p>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대로와 노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p> <p>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p> <p>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p> <p>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p> | <p>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p>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 비용의 산정은 군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
| <신설> |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로 한다. |
| <신설> | 제8조의2(원인자 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
|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 <삭제> |
|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삭제>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 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자체 제작·설치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p> | |

| 현행 | 개정안 |
|---|--|
| <p>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p>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p> | <p>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p> |
| <p>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 <p>제11조(법에 따른 ----- -----) ----- ----- 법----- -----, 법----- ----- 관계 법령에 따라 ----- -----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p>제12조(도로명주소 -----) ① -----</p> <p>-----</p> <p>-----</p> <p>-----</p> <p>----- 도로명주소 -----</p> <p>-----.</p> <p>② 도로명주소 -----</p> <p>-----</p> <p>-----</p> <p>-----.</p> |
| <p>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p>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거창군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제6장 <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u> | 제6장 <u>도로명주소시설</u> ----- |
|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u>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u>에 따라 연 1회 이상 <u>도로명시설</u>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경우에는 <u>법 제16조제2항</u>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u>건축물</u>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u>법 제4조</u>에 따라 훼손·망실된 <u>도로명시설</u>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p> |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u>법 제13조제2항</u>----- ----- <u>도로명주소시설</u> ----- ----- <u>건물등</u>-----.</p> <p>② ----- <u>도로명주소시설</u>----- -----.</p> |
| <p>제16조(<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u>)</p> <p>① 군수는 <u>법 제13조 및 영 제17조</u>에 따른 <u>도로명사업</u>에 따라 설치된 <u>도로명시설</u>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최근 <u>3년</u>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u>도로명 관련시설</u>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p> | <p>제16조(<u>도로명주소시설</u>-----)</p> <p>① --- <u>법 제13조 및 영 제17조</u>에 따라 <u>도로명주소시설</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3년</u> 이내 ----- <u>도로명주소시설</u>----- -----</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u>도로명시설</u>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명시설</u>의 종류, 수량, 위치 2. (생략) 3. <u>도로명시설</u>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u>도로명시설</u> 일제조사 계획 5. <u>도로명시설</u>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u>도로명시설</u>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생략) | <p>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명주소시설</u>----- 2. (현행과 같음) 3. <u>도로명주소시설</u>----- 4. <u>도로명주소시설</u>----- 5. <u>도로명주소시설</u>----- ----- 6. <u>도로명주소시설</u>----- ----- 7. (현행과 같음) |
| <p>제17조(<u>도로명시설</u>의 점검) ① 군수는 <u>도로명시설</u>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u>도로명시설</u>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u>도로명시설</u>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17조(<u>도로명주소시설</u>-----) ① ----- <u>도로명주소시설</u>----- ----- ----- <u>도로명주소시설</u>----- -----.</p> <p>② ----- <u>도로명주소시설</u>----- ----- ----- -----.</p> |
| <p>제18조(<u>수탁자</u>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u>도로명시설</u>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 <p>제18조(<u>수탁자</u>의 지도·감독) ----- ----- <u>도로명주소시설</u>-----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p> <p>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마감일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p>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p> <p>제19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p>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⑤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p> <p>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u>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u>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u>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 시설 설치</u></p> <p>2. (생략)</p> <p>3. 산하기관, 군내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u>생활화 촉진</u> 사업 지원</p> <p>4. 그 밖에 군수가 <u>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u>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p>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p> <p>제23조(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시책 추진) ----- <u>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u> -----</p> <p>1. ----- <u>도로명주소안내도</u> ----- <u>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u></p> <p>2. (현행과 같음)</p> <p>3. ----- <u>사용 촉진</u> -----</p> <p>4. ----- <u>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u> -----</p> |
| <p>제9장 거창군 새주소위원회 설치 등</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 <p>제9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p> <p>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p> <p>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p> <p>3. 거창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p> <p>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관계 공무원</p> <p>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군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 ----- 경우에는 ----- -----.</p> <p>1. ~ 3.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p> <p>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p> <p>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p> | <p><삭 제></p> |
| <p>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 <p>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 ---- 의결--.</p> |
| <p>④ 제26조의 심의사항에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p>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토의 및 진행사항</p> <p>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p> <p>5. (생략)</p> | <p>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 -----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심의결과</p> <p><삭제></p> <p>5.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 <p>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6 |
|----------|-----------|

| | |
|-------|-------------|
| 제출연월일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종전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통합 법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목적조항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
 - 「측량법」 제58조제4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중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 지명의 조사내용·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10조).

-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하되,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하며,
-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고,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의견청취,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나. 예산조치 : 수요 발생시 필요 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2. 1. ~ 2010. 2.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7 |
|----------|-----------|

| | |
|-------|-------------|
| 제출연월일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신설하여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8.13개정, 시행 2009.10.2)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율함에 있어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
(안 제7조의2 신설).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함
(조례 제정·시행일(2009.12.30)부터 5년간)

나.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로서 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안 제8조제4항).

- 연임규정 삭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생략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 | 제3장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 |
| 제7조(설치 및 기능) (생략) | 제7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u>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u> |
| | <u>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u> |
| | <u>한다.</u> |
|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략) |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
|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
| | <u>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 |
| | <u>으로 한다.</u>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8 |
|----------|-----------|

| | |
|-------|-------------|
| 제출일자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서민주거 생활안정에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2).
 - 8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당 1대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는 단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3. 19. ~ 2010. 3.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란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 [별표 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별표 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시설물 | 설치기준 | 시설물 | 설치기준 |
| 1. ~ 4. (생략) | (생략) | 1. ~ 4.(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p> <p>○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p> <p>○ <u>다만,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대수를 적용한다.</u></p>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p> <p>○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p> <p><u><단서 삭제></u></p> |
| 6. ~ 7. (생략) | (생략) | 6. ~ 7.(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19 |
|----------|-----------|

| | |
|-------|-------------|
| 제출연월일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신설하여 명시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8.13개정, 시행 2009.10.2)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율함에 있어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
(안 제6조의2 신설).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함
(조례 제정·시행일(2009.12.30)부터 5년간)

나.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
(안 제9조 단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생략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생략)</p> <p><신설></p> | <p>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p> |
|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p>제9조(위원의 임기) ----- -----.</p> <p>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20 |
|----------|-----------|

| | |
|-------|-------------|
| 제출연월일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최근 농업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농업재해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농업 경영안정 시책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현행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농업전문인력 육성’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제명,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조성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 중 균 출연금의 출연 금액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설치 :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 → 200억원

○ 균 출연금 출연 금액 및 방법 :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함

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명시함)(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기금의 용도 명시 : 농업인등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및 보조사업에 사용

마.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의 일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정비 내용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아. 기금의 융자사업 재원과 보조지원 대상사업의 재원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기금에서 융자하는 재원은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
-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함

자. 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농업인 외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융자 및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 융자대상 사업 추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
- 보조대상 사업 추가 :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

차. 용자대상 사업에 대한 용자금 지원 한도액,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일반적인 용자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한도,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용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12조의2, 제112조의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전출금) : 10억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3. 9. ~ 2010. 3.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
5. “농업재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품을 말한다.
7.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업인등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및 보조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자금의 용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기금에서 용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 심의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이차보전”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기타 심의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한다.

① 제7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용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

③ 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4.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①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중 “제9조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출기간”을 “용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한도,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용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차보전 방법”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용자한 경우에는 용자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차보전 자원”을 “이자차액 보전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를 받은 자가”를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이”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간”을 “상환기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금융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용자 받은 가구와 금융기관”을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과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을 “상환통지를 받은 농업인등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금융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를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기금관리수탁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p> <p>가. 후계농업인, 후계임업인</p> <p>나. 전업농, 독농가</p> <p>다. 농·축·임업생산자 단체</p> <p>2. 지역명품</p> <p>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p> <p>3. 재해농가</p> <p>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농가</p> <p>나. 기타 거창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가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농가</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p> <p>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p>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p> | <p>5. “농업재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p> <p>6.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p> <p>7.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p>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신설> | 제3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및 보조사업에 사용한다. |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거창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기금 증식사업 | ② 군수는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 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p> <p>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 <p>제5조(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보조지원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 <p>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농업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p> |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p>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p> <p>2.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대상자 선정</p> <p>3. 기타 기금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p>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p> <p>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p> <p>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자금의 용자계획</p> <p>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
| <p>제7조(용자재원및대출) ① 농업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용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으로 용자금을 대출한다.</p> <p>② 연간 대출 용자금액과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결정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기금에서 용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p> <p>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p> <p>① 제7조에 의한 용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u>농업인</u>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사업</p> <p>2. ~ 5. (생략)</p> <p><신설></p> <p>6. <u>기타 심의회</u>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p> <p>② (생략)</p> <p>③ 기금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는 대상</p> |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p> <p>① 제7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용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농업인등</u>-----</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u></p> <p>7. <u>그 밖에 위원회</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p> |
| <p>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생략)</p> <p>2. <u>제1항에 의한 용자대상 사업에 지원</u>된 용자금의 <u>이차보전</u></p> <p><신설></p> <p><신설></p> <p>3. <u>기타 심의회</u>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p> | <p>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항에 따른</u> -----</p> <p>----- <u>이자차액 보전</u></p> <p>3. <u>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u></p> <p>4. <u>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u></p> <p>5. <u>그 밖에 위원회</u>-----</p> <p>---</p> |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p> <p>① 용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② 기금의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 <p>제9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p> <p>①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② ----- 위원회-----.</p> |
| <p>제10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통보)</p> <p>군수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10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통보)</p> <p>--- 제9조에 따른 ----- ----- 금융관리수탁기관-----.</p> |
| <p>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생략)</p> <p>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1. ~ 2. (생략)</p> <p><신설></p> <p>③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본인부담 보험료 보조지원 규모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지원사업등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 <p>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용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 각 호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한도,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용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④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이자보전 방법) ① 군수는 <u>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u>을 지원한다.</p> <p>② <u>이자보전</u> 재원은 기금 이식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p> <p>③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 -----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용자한 경우에는 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p> <p>② <u>이자차액 보전재원</u>-----.</p> <p>③ <u>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u>으로 정한다.</p> |
| <p>제13조(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① 군수는 <u>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u> 해당할 때에는 <u>상환기간</u>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기타 금융기관의 요청</u> 등 용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p> <p>② <u>제1항에 의하여</u>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u>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 <u>용자 받은 가구와 금융기관에 상환통지</u>를 하여야 하며, <u>상환통지를 받은 가구</u>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p> | <p>제13조(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① -- <u>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이</u> -- 각 호의 어느 하나----- 상환기일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기금관리수탁기관</u>-----</p> <p>② <u>제1항에 따라</u> ----- <u>위원회</u>----- <u>용자를 받은 농업인 등과 기금관리수탁기관</u>----- <u>상환통지를 받은 농업인등은</u> -----.</p> |
| <p>제14조(사후관리) 군수와 <u>금융기관</u>의 장은 필요한 경우 <u>용자금을 지원받은 자</u>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용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 <p>제14조(사후관리) --- <u>기금관리수탁기관</u>----- <u>용자를 받은 농업인등</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5조(감독과 명령) 군수는 기금적립 및 용자금 취급협약을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용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p> | <p>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p> <p>① 기금관리수탁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 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
| <p>제16조(회계관리)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으로 한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p> <p>2.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p> <p>3.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p> <p>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한다.</p> <p>④ 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 <p>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p> <p>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p> <p>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p> <p>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p> <p>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7조(준용)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 <p>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의 예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0 ~ 21 |
|----------|-----------|

| | |
|-------|-------------|
| 제출일자 | 2010. 4. 5.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 발굴·개선방침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 자재를 종전 관급품에서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자재로 규정하는 등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 및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종전 관급품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 및 일반제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18조제2항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25. ~ 2010. 2.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⑤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본문 생략)</p> <p>1. ~ 2. (생 략)</p> <p>② <u>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u>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u></p> <p>④ (생 략)</p> <p>⑤ <u>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u></p> <p>③ ----- ----- ----- . <단서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u></p> |

